

PL 보험이란?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 혹은 제공한 생산물 (제조물)이 소비자(타인)에게 판매된 후 보험 기간 중에 그 생산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체 상해 또는 재물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



※ 즉, 제조물 책임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보상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한 제조물로 인하여 제3자가 신체적 또는 재물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배상책임 및 관련 비용이다.

- 확정된 손해 배상금
-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차압해제 보증보험료 등.
- 피보험자가 조사 등을 위해 보험회사에 협력함으로써 발생된 비용
- 확정 판결 전 또는 후의 법정 이자.

▶ 해설 및 이행 방안

보험약관에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가입을 통하여 보상 받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며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한 이해이다.

▶ 약관내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 피 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 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협조 요청에 따르기 위해 지급한 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2.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노동쟁의 등
3. 천재지변
4. 원자핵물질, 방사능
5. 계약상 가중책임
6. 환경오염 및 오염제거 비용
7. 보호, 관리, 통제하의 타인의 재물
8. 피보험자의 근로자의 업무중 신체장해
9.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 물의 사용손실(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 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부터 기이한) 단 급격하고 우연한 손상으로 인한 타재물의 사용손실을 담보함
10. 피보험자의 생산물 자체의 손해
11. 결함있는 피보험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
12.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손해 단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13. 징벌적 벌과금

1) 보험계약자

2) 보험 기간 :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함



3)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

- 보상한도액은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한도액이며, 사고발생시 배상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손해 사고 기준 증권의 경우(Occurrence Basis Policy)

- ① 하나의 사고당 (Any one occurrence) : 하나의 사고당 보험사의 보상 한도액
- ② 총 보상 한도액 (In the aggregate) : 동 보험기간동안 모든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총 보상 한도액
- ③ 보험 담보 기준
 (신체적 상해나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
 - 사고 발생 시점의 보험사가 사고 이후 언제라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 동 손해사고 기준 증권을 인수한 보험사가 책임진다는장점이 있으나, 사고이후 장기간 소요된 시점에서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사고 발생시점의 보상 한도액을 적용하므로 현실적인 담보를 제공하지못 하는 맹점이 있음



(2) 배상청구 기준 증권의 경우(Claim-made Basis Policy)

- ① 하나의 청구당 (Any one claim) : 하나의 배상 청구당 보험사의 보상 한도액
- ② 총보상 한도액 (In the aggregate) : 동 보험기간에 제기된 모든 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총 보상 한도액
- ③ 보험 담보 기준
 (사고의 발생지점과는 상관없이 클레임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에 통보되어 기록되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는 보험)
 - Long Tail(사고/클레임/해결이 장기화)을 고려 할 때 손해 배상청구 시점의 보상 한도액 등을 적용하므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고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시점의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명확함이 있으나, 보험 기간내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만을 담보하는 맹점이 있음

① 소급 담보 일자(Retroactive Date)

소급 담보 일자는 배상청구 기준 증권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 사고를 보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을 말함

그러나, 소급 담보 일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보험개시일 이전과 동일하다.

② 보고 연장 담보 기간(Extended Reporting Date)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 있어서 1차년도 보험이 만료된 이후 2차년 도에 보험을 갱신 가입하지 못할 경우, 1차년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1차년도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연장 담보 기간"을 두고있음. 보통 보험 계약에서는 "보고 연장 담보 기간"을 통상60일 정도의 기간 내에서 설정함

(3) 공제 금액 (Deductible)

▶ 개념

공제금액은 하나의 사고 당(손해사고 기준 증권)또는 하나 의 청구 당(배상 청구 기준 증권)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단, 손해 배상금 이외 방어비용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설정기준

공제금액은 피보험자의 능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로 설정하며, 특히, 예견 가능하며 잦은 손해 규모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기제품 PL보험 가입문의 : 전기제품안전협회 김영탁 과장, 김하나 주임(Tel. 02-579-3291 / Fax. 02-578-3640)